

기안용지

분류기호 문서번호	주기 30411-2072	(전화: 731-6787)	시행상 특별취급		
보존기간	영구·출영구 10.5.3.1.	시 장			
수신처 보존기간		1369			
시행일자	'91. 12. 30				
보조 기관	부시장	협조 기관	분석용제		
	주택국장		가정복지국장 업무담당관		
	주택기획과장				
기안책임자	주택기획과장 이장희	92.1.3. 총경 13-10	인		
실용 수신 참조	각안참조	반신명의 시 장	인 조필 원익		
제목	주택건설 사업계획 승인	1-394 356 359 358			
(제 1 안) 내부결재					
1. 서울특별시 도시개발공사 사장이 신청한 신내지구, 공동1지구, 원개3지구, 방화					
지구2차 사업아파트 주택건설 사업계획승인 신청에 대하여 주택건설촉진법 제3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별첨과 같다. 승인처리하고자 합니다.					
과: 승인내역			(단위: 호)		
구 별	계	구 영 별			
		영구임대	근로복지	임대	소영분양
계	13,647	5,126	3,756	1,848	2,917
신내지구	3,236	1,955		477	804
공동1지구	3,420	1,395	1,500		525

월계지구	3,744	1,372	884	775	713
방화지구2차	3,247	404	1,372	596	875

첨부 : 1) 사업계획 승인 내역 1부.

2) 고시문 사본 1부. 끝.

(제 2 안)

수신 : 서울특별시 도시개발공사 사장 이 광 하

참조 : 설계관리부장

제목 : 주택건설 사업계획 승인

1. 귀 공사에서 승인 신청한 방화지구2차, 공릉1지구, 월계3지구, 신내지구 시영

아파트 주택건설 사업계획에 대하여 주택건설촉진법 제33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승인하고

동법 제33조 제4항, 동법 시행령 제32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고시하니 사업시행에 차질이

없기 바랍니다.

첨부 : 1) 사업계획 승인내역 1부.

2) 고시문 사본 1부. 끝.

(제 3 안)

수신 : 건설부장관

참조 : 수신처 참조

제목 : 주택건설 사업계획 승인 결과 보고

서울특별시 도시개발공사 사장으로부터 신내지구, 공릉1지구, 월계3지구, 방화지구

2차 서영아파트 주택건설 사업계획 승인 신청이 있어 주택건설촉진법 제33조 제1항의 규정
에 의거 "별첨"과 같이 승인하였기 보고합니다.

첨부 : 신내지구, 공릉1지구, 월계3지구, 방화지구 2차 서영아파트 주택건설 사업계획 승
인 결과 보고서 1부. 끝.

수신지 : 주택관리과장, 주택기금과장

(제 4. 안)

수신 : 수신처 참조

제목 : 주택건설 사업계획 승인내역 통보

1. 주택건설촉진법 제33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별첨과 같이 방화지구 2차, 공릉
1지구, 월계3지구, 신내지구 서영아파트 주택건설 사업계획을 승인하였기 통보하오니(아오니)
업무수행에 참고하고(아시고) 필요한 조치를 취하기(취하시기) 바람(바랍니다).

첨부 : 1) 사업승인 내역 1부.

2) 고시안 1부. 끝.

수신처 : 정소1과장, 정소2과장, 사외과장, 도시계획과장, 시설계획과장, 도시개발과장,

건축지도과장, 도로계획과장, 도로시설과장, 교통기획과장, 주차계획담당관,

비상계획과장, 상공과장, 연료과장, 가스과장, 공원과장, 환경과장, 녹지과장,

조경과장, 야수지리과장, 직수과장, 상수도사업본부장(급수부상), 도봉소방서장,

서울특별시 교육위원회 교육감(관리과장), 태릉경찰서장, 한국전기통신공사장, 한국전력

공사장, 주택은행장, 동대문소방서장, 강서소방서장, 도봉경찰서장

(제 5 안)

수신 : 공보관.

제목 : 시보개제 의뢰

1. 주택건설촉진법 제33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방화지구2차, 공릉1지구, 월계3

지구, 신내지구 시영아파트 주택건설 사업계획을 승인하고 동법 제33조 제4항, 동법 시행령

제32조의 5규정에 의거 고시하고자 하오니 게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 : 1) 고시안 각2부. 끝.

(제 6 안)

수신 : 총무처 장관

참조 : 법무담당관

제목 : 관보개제 의뢰

1. 주택건설촉진법 제33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방화지구2차, 공릉1지구, 월계

3지구, 신내지구 시영아파트 주택건설 사업계획을 승인하고 동법 제33조 제4항, 동법 시행

령 제32조의 5규정에 의거 고시하고자 하오니 게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 : 고시안 2부. 끝.

(제 7 안)


수신 : 수신처 참조

참조 : 주택과장

제목 : 주택건설 사업계획 승인내역 통보

서울특별시 도시개발공사로부터 방화지구2차, 공릉1지구, 월계3지구, 신내지구 석영

아파트 주택건설 사업계획 승인 신청이 있어 주택건설촉진법 제33조 제1항에 의거 "별첨"과

같이 승인하였기 동사업내역을 관할부  통보하여 업무추행에 차질이 없도록 하기 바람.

첨부 : 사업승인내역 1부. 끝.

수신처 : 종량구청장(주택과), 노원구청장(주택과), 강서구청장(주택과)

신내지구 1단지 주택건설 사업계획 승인내역

1. 사업주체 : 서울특별시 도시개발공사 사장 이 광 하

2. 사업위치 : 서울특별시 중랑구 신내동 택지개발 사업지구내

3. 사업내용

가. 총 골

사업계획별	대 지 면 적 (㎡)	건축연면적 (㎡)	동 수	호 수
계	60,626	128,328.78	14	2,236
영구임대, 임대 주택건설사업	32,878	68,592.93	8	1,432
완 영 단 지 주택건설사업	27,750	59,735.85	6	804

나. 사업규모

- 영구임대아파트 955호	- 임대아파트 477호	- 완영아파트 804호
· 전용 24.05㎡ 657호	· 전용 24.05㎡ 239호	· 전용 39.76㎡ 239호
· // 30.4㎡ 150호	· // 49.77㎡ 238호	· // 49.77㎡ 320호
· // 39.585㎡ 148호	· // ㎡ 호	· // 59.76㎡ 239호

- 기타 부대시설 : 상가 2동, 연리동 1동, 지하주차장 2동, 사회복지관 1동 등
상정서 내용과 같음.

- 구 조 { 주요 구조부 : 철근콘크리트 라멘조 및 벽식조
기 조 : 파일

공사방법비 : 114,492,485천원

4. 사업기간 : 1991. 12. ~ 1993. 8

5. 설계도서 : 각 사업별 신청 설계도서와 같음

6. 승인조건 : 별첨

신내지구 1블럭 주택건설사업 승인조건

(공통사항)

1. 쓰레기 투입시설 및 보관용기 설치는 별도 서시가 있을 때까지 시설 설치할 유보할 것.
2. 사회복지관내 노인정과 권리사무소는 별도 분리 검토할 것.
3. 수도권정비심의위원회에서 '91.8.30 신내지구 택지개발사업 인구영향평가 심의의결 사항을 이행할 것.
4. 택지개발 실시계획 승인후 공시 시행할 것.
5. 주택건설촉진법 시행규칙 제13조 제5항 제4호에서 정한 사항을 이행할 것.
6. 개발계획 승인시 부여된 조건 및 향후 실시계획 승인시 부여된 조건을 이행할 것 (인구, 교통, 환경영향평가 및 기타 서인 등)
7. 교통영향평가지 제시된 단차에서 간선도로 전. 출입을 피하고 집산도로를 이용하여 전. 출입토 속 한 교통영향평가 조건을 이행할 것.
8. 난방공급은 전체 난방공급방법을 관련부서 협의결과중에 있으므로 향후결과에 따라 처리할 것.
9. 주택건설계획 (면적, 호수, 풍수, 용적률)이 기승인된 개발계획 내용과 상이한 것은 향후 개발 계획 변경시 반영할 것.
10. 도로시설에 관하여는 별지 "별표1 도로시설 이행사항"을 준수할 것.
11. 교통영향평가 대상으로 동평가를 받은 후 공시 시행할 것.
12. 향후 주차수요 증가시 주차시설을 증설할 수 있는 계획을 수립할 것.
13. 주차장 설치기준은 주차장법 시행규칙 제6조를 준수할 것.
14. 임대건물 지하주차장의 램프와 램프임 주차구획간의 거리가 협소하여 차행되진 및 전. 출입에 장애가 예상되니 주차구획 배치 재검토할 것.
15. 군부대의 협의종이므로 협의결과를 이행할 것.
16. 판매시설은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의 규모이상으로 설치할 것.
17. 주차커스 공급이 가능한 지역이므로 협의 차공할 것.
18. 환경영향평가 검토 및 환경처 협의결과를 준수할 것.
19. 인근 도로로부터의 소음피해가 없도록 병용수령대, 병용벽 등 병용시설을 설치할 것.
20. 대기환경보전법 및 소음진동규제법이 정한 제반의부사항을 준수할 것.

21. 동일 원공급 시설로부터 열을 공급받는 단지내의 모든 세대의 평균 신유면적이 46.2㎡ 이상 82.6㎡ 미만인 경우에는 LNG 또는 LNG유량 0.4% 이하의 유류를 연료로 사용할 것.
22. 고목식재지의 수하식재중 "008도면 6m 도면" 등 권목이 과밀하게 배식된 곳은 조정할 것.
23. 한 곳에 배치된 휴게소 2,3은 단지여건에 알맞게 고르게 분포되도록 재배치 할 것.
24. 조경시설물은 내구력 및 부식에 강한 재료를 사용하여 미려하게 시공할 것.
25. 무궁화는 시민의 동행이 많은 일정구간이나 단지를 정하여 단목으로 다수 식재 검토할 것.
26. 하수처리능 택지개발 실시계획 승인후 처리안 요구할 것.
27. 소방시설 기술수준에 관한 사항은 소방시설 시공신고시 세부계획도서에 의하여 재확인 받을 것.
28. 소방시설은 국가검정품으로서 소방관계법규에 적합하게 시설하여 원공검사를 받은 후에 사용할 것.
29. 기타 방화관계 재규정(건축법, 전기사업법, 고압가스안전관리법)에도 적합하도록 협조할 것.
30. 본 택지개발로 주변지역이 내수침수가 발생지 않도록 대책 수립할 것.
31. 도시개발에 따라 유출을 증가로 인한 홍수시 일시 유출량을 감소시킬 수 있는 우수저류시설 등 유출억제 시설을 검토 설치할 것.
32. 1-1단지 제3어린이놀이터는 어린이공원과 연결되어 있으므로 가급적 놀이시설이 중복되지 않게 할 것.
33. 놀이시설은 안전성에 유의하고, 놀이터 주변에 조명등을 설치하고 응수기를 설치할 것.
34. 온양아파트의 유지원을 1층은 어린이집, 2층은 유치원으로 하고, 출입구를 분리 설치할 것.
35. 영구원예, 임대아파트단지 어린이집 설치면적은 사회복지관내 보육아동을 최소 70명정도 수용 시설을 확보할 것.
36. 상수도는 동지구 급수공급을 위한 택지개발사업에 따른 상수도계획 협의확정후 결과에 따른 것.
37. 1-1단지는 '92년 1월이후 착공할 것.
38. 기존 도로가 협소하여 공사용 차량통행시 민원발생이 예상되므로 신내지구로 진입하는 외곽 도로 공사를 선행한 후 본공사 착수할 것.
39. 서상개발 허가여부는 시설물의 용도, 이용계획 등을 권할구정장과 협의 필요한 조치를 할 것.
40. 기타 조건 제시하지 아니한 사항은 주택건설기준등에관한규정등 제반법규에 적합하게 시행할 것.
41. '92년도 착공하는 임대주택 477호는 '92계획에 의거 공공임대로 전환할 것.

(별표1) 도로시설 이행사항

1. 도로 (보도포장)

- 보도포장은 서울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보도포장재의 보급회 병인과 관련, 신사가시 및 대규모 주거단지애 조화될 수 있고, 보행공간의 쾌적성을 도모할 수 있는 내구성이 강한 특수성아스팔트, 마스팔트콘크리트, 화강석브럭 또는 소형고압브럭중에서 선정하여 사용
- 각종 지하시설물의 유지권리를 도모하고, 도로굴착을 억제하기 위하여 지하 매설물은 공동구를 설치하여 배관 시행

2. 가로등 설치

1) 설치기준

○ 기준 조도 : 20lx 이상

○ 등 고

- 편 속 : $H \geq 1.2 \times$ 시도폭

- 지그재그 : $H \geq 0.8 \times$ 차도폭

- 마주보기 : $H \geq 0.6 \times$ 차도폭

> ○ 경 간 : $5 \leq 3.5 \times$ 등고

○ 전원 공급 : 2회로 방식

○ 선 가 요 굴 : 종량제

○ 정소등 방식 : 무선원격 조정

2) 인수인계

○ 가로등 시설물의 인수인계는 단계별 입주자 입주시기를 기준 인수인계

3) 전력수용 신청

○ 시설자의 명의로 전력수용 신청하고, 인수인계후 권할구청장 명의로 변경

4) 기타 의견

○ 가로등 시설은 현전 수전점부터 시행

- 모든 시설물은 인수인계전에는 시설주가 관리
- 등수의 모형은 9m 이하는 민형, 10m 이상은 필직대피로 하고, 등기구는 세종로 방향으로 사용
- 주후 실시 설계도서를 재검토 받아 시설

(별표2) 상수도 급수 이행사항

1. 규정된 용량의 저수조 (아파트 : 별도 협의) 외 흡수정 이하의 정치를 동일단지내에 실시하고, 지하저수조를 경우하거전 인입관로상에 개폐시간 자동조절용 전동밸브를 설치하여 야간에 저수 침식급수토록 지울적으로 운영 관리해야 한다. 단, 아파트 저수조 용량에 대하여는 현재 추진중인 공신배수지 건설과 관련 우리본부 (생산관리부) 외 협의하여야 함.
2. 단전, 연수를 대비하여 아래의 비상발전설비와 비상급수시설을 설치 및 확보하여야 함.
 - 비상 발전기 등 전력공급 설비
 - 자체 동력을 겸한 양수펌프 및 비상급수대 (표준도 : 권할수도사업소 비치) 외 그
그 연결용 호스 $a : 1b1 (3조)$
 $a : 2, 4, 7, 9b1 (각각 2조)$
 - 비상 급수공급에 필요한 장비, 자재, 공구 등
3. 급수에 따른 양수기실 및 단지내 배관 등 급수시설 공급에 관한 세부사항은 권할수도사업소장과 사전 협의하여야 함.
4. 우리본부에서 시행하는 배수지 (구 공신배수지) 위치변경에 따른 단지내 상수도 계획을 철저히 협의하여야 함.
5. 양수기 동파방지를 위하여 상수도사업본부와 협의할 것.
6. 단전사항 : 세대당 1일 200ℓ 이상의 비상용수를 공급할 수 있는 지하수 개발
7. 수도미터 동파 방지를 위하여 상수도 사업본부와 협의할 것.

고 시

제 11-111시	91. 12. 24	제 370 호
관 당 자	부 자 장	업 무 당 당 관
	홍	경

1991 -
서울특별시고시제 394호

신내지구 주택건설 사업계획 승인

1. 도시개발공사 사장이 시행하는 신내지구1단지 주택건설 사업계획을 주택건설촉진법 제33조 제1항에 의거 승인하고 동법 제33조 제4항, 동법시행령 제32조 5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 관련도서는 도시개발공사 건축설계과에 비치하고, 이해 관계인에게 열람합니다.

1991. 12

서울특별시장

가. 사업명 : 신내지구 1단지 주택건설사업

나. 사업주체 : 성명 - 서울특별시 도시개발공사 사장 이광하

주소 - 서울시 성동구 성수1가 685-20 (전화 460-2302)

다. 사업내용

사업명	사업위치	대지	건설호수
신내지구 1단지 주택건설사업	서울시 중랑구 신내동 택지개발 사업지구내	60,628㎡	영구임대 955호
			임대 477호
			분양 804호

라. 사업시행기간 : 1991. 12 ~ 1993. 8

[별지 제 30 호서식]

분류기호

수신 : 건설부장관

전화 731 - 6787

발신 : 서울특별시장 ㉑

사업계획승인 (변경) 결과보고서

신청인	① 상 호	서울특별시 도시개발공사		② 등록또는 지정번호	206-82-04013	
	③ 대 표 자	이 광 하		④ 주민등록번호		
	⑤ 영 소 업 재 장 지	서울.성동.성수1가 685-20 (전화) 460 - 2302				
승인사유	⑥ 사 업 위 치	서울.중랑.신내택지개발지구내		⑦ 용도지역 및 지구	택지개발지구	
	사 업 내 용	⑧ 대지면적	⑨ 건축면적	⑩ 주택형별	⑪ 주택규모	⑫ 사업비
		60,628	128,326.78	단독 평형 연립 평형 아파트 평형 전용 7-18	동 세대 동 세대 14 동 2,236세대	114,492,485천원
		⑬ 착공예정일자		⑭ 준공예정일자		⑮ 당초승인일자
사 업 기 간	91. 12.		93. 1			
요	⑯ 승 인 조 건	별첨				
⑰ 부대시설및복리시설 적 정 처 리 여 부	적정처리					
⑱ 변 경 승 인 사 항						

신내지구 2단지 주택건설 사업계획 승인내역

1. 사업주체 : 서울특별시 도시개발공사 사장 이광하

2. 사업위치 : 서울특별시 중랑구 신내동 택지개발 사업지구내

3. 사업내용

○ 대지면적 : 20,567 m²

○ 건축연면적 : 49,019.422 m²

○ 사업규모

- 영구임대아파트 8동 1,000호

- 전용 27.38 m² 1,000호

- 기타 부대복리시설 : 상가 1동, 관리동 1동, 지하주차장 2동, 사회복지관 1동 등
신청서 내용과 같음.

구조 [주요 구조부 : 철근콘크리트 라멘조 및 벽식조
기 초 : 파일조

○ 사업비 : 38,161,170천원

4. 사업기간 : 1991. 12. ~ 1993. 6

5. 설계도서 : 각 사업별 신청 설계도서와 같음

6. 승인조건 : 별첨

신내지구 2단지 주택건설사업 승인조건

< 공통사항 >

1. 쓰레기 투입시설 및 보관용기 설치는 별도 지시가 있을 때까지 시설 설치를 유보할 것.
2. 사회복지관내 노인장과 관리사무소는 별도 분리 검토하고, 아·미용실은 주민교육 시설로 전환할 것.
3. 수도권정비심의위원회에서 '91.8.30 신내지구 택지개발사업 인구영향평가 심의의결 시행을 이행할 것.
4. 택지개발 실시계획 승인후 공사 시행할 것.
5. 주택건설촉진법 시행규칙 제19조 제5항 제4호에서 정한 시행을 이행할 것.
6. 개발계획 승인시 부여된 조건 및 향후 실시계획 승인시 부여될 조건을 이행할 것(인구, 교통, 환경영향평가 및 기타 사안 등)
7. 교통영향평가차 제시된 단지에서 간선도로 전·출입을 피하고 집선도로를 이용하여 전·출입토록 한 교통영향평가 조건을 이행할 것.
8. 노차이용의면을 고려, 승수는 15종 상형조각 하는 등 개발계획 수준의 주택모양 건립을 검토할 것.
9. 난방공급은 현재 난방공급 방법을 관련부서 협의 검토중에 있으므로 향후 결과에 따라 처리될 것.
10. 주택건설계획(면적, 호수, 층수, 용적율)이 기승인된 개발계획 내용과 상이한 것은 향후 개발계획 변경시 반영할 것.
11. 도로시성에 관하여는 별지 "별표1 도로시설 이행사항"을 준수할 것.
12. 교통영향평가 대상으로 동평가를 받은 후 공사 시행할 것.
13. 향후 주차수요 증가시 주차시설을 증설할 수 있는 계획을 수립할 것.
14. 주차장 설비기준은 주차장법 시행규칙 제6조를 준수할 것.
15. 관부와의 협의중이므로 협의결과를 이행할 것.
16. 시정개설허가 여부는 시설물의 용도, 이용계획 등을 관할 구청장과 협의 필요한 조치를 할 것.
17. 도시가스 공급이 가능한 지역이므로 협의 시공할 것.
18. 환경영향평가 결과 및 환경차 협의결과를 준수할 것.

19. 인근 도로로부터의 소음피해가 없도록 방음수령대, 방음벽 등 방음시설을 설치할 것.
20. 대기환경보전법 및 소음진동규제법이 정한 제반의무사항을 준수할 것.
21. 동일 열공급 시설로부터 열을 공급받는 단지내의 모든 세대의 평균 전용면적이 46.2㎡ 이상 82.6㎡ 미만인 경우에는 LNG 또는 휘발유량 0.4% 이하의 유류를 연료로 사용할 것.
22. 15m 도로와 대시외의 경계선에 차폐 식재 검토할 것.
23. 20m 도로변 수림보강 검토할 것.
24. 구매생활 시설과의 통행의 편리를 위해 휴게소², 배구장 부분에 통행을 위한 수목배식 조정을 검토할 것.
25. 조경시설물은 내구력 및 부식에 강한 재료를 사용하여 미려하게 시공할 것.
26. 무공회는 시안의 통행이 많은 일정구간이나 단지를 정하여 단목으로 거주 식재 검토할 것.
27. 하수처리는 택지개발 실시계획 승인후 처리인 요구할 것.
28. 소방시설 기술수준에 관한 사항은 소방시설 시공신고시 세부계획도시에 의하여 채택인 받은 것.
29. 소방시설은 국가검정품으로서 소방관계법규에 적합하게 시설하여 인공검사를 받은 후에 사용할 것.
30. 변 택지개발로 주변지역이 내수침수가 발생치 않도록 대책을 수립할 것.
31. 도시개발에 따라 유출율 증가로 인한 홍수시 일시 유출량을 감소시킬 수 있는 우수저류시설 등 유출억제 시설을 검토 설치할 것.
32. 놀이시설은 안전성에 유의하고, 놀이터 주변에 조명등을 설치하고 음수기를 설치할 것.
33. 사회복지관내 어린이집 외장실용 방, 여 구분하고, 조리실 및 식당은 특이시설 전용으로 할 것.
34. 상수도는 동지구 급수공급을 위한 택지개발 사업에 따른 상수도계획 협의확정후 결과에 따를 것.
35. 기존 도로가 협소하여 공사중 차량동행시 민원발생이 예상되므로 선내지구로 진입하는 외곽 도로 공사를 선행한 후 본공사 착수할 것.
36. 시장개설 허가어부는 시설물의 용도, 이용계획 등을 관할구청장과 협의 필요한 조치를 할 것.
37. 기타조건 제시하지 아니한 사항은 주택건설기준등에관한규정등 제반법규에 식당하게 시공할 것.

(별표1) 도로시설 이행사항

1. 도 로 (보도포장)

- 보도포장은 서울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보도포장제의 고급화 방안과 관련, 신시가지 및 대규모 주거단지에 조화될 수 있고, 보행공간의 쾌적성을 도모할 수 있는 내구성이 강한 특수성아스팔트, 아스팔트콘크리트, 화강석브럭 또는 소형그립브럭중에서 선정하여 사용
- 각종 지하시설물의 유지관리를 도모하고, 도로굴착을 억제하기 위하여 지하 매설물은 공동구를 설치하여 배관 시행

2. 가로등 설치

1) 설치기준

○ 기준 조도 : 20lx 이상

○ 등 고

- 전 쪽 : $H \geq 1.2 \times$ 차도폭

- 치그제그 : $H \geq 0.8 \times$ 차도폭

- 마주보기 : $H \geq 0.6 \times$ 차도폭

○ 경 간 : $5 \leq 3.5 \times$ 등고

○ 전원 공급 : 2회로 방식

○ 전기 요금 : 풍량제

○ 청소등 방식 : 무선원격 조정

2) 인수인계

○ 가로등 시설물의 인수인계는 단계별 입주자 입주시기별 기준 인수인계

3) 전력수용 신청

○ 시설자의 명의로 전력수용 신청하고, 인수인계후 관할구청장 명의로 변경

4) 기타 의견

○ 가로등 시설은 현전 수전정부터 시공

- 모든 시설물은 인수인계전에는 시설주가 관리
- 등주의 모형은 9m 이하는 원형, 10m 이상은 필릿테파로 하고, 등기구는 세종로 대형으로 사용
- 주후 실시 설계도시를 재검토 받아 시설

(결 표 2) 상수도 급수 이행사항

1. 규정된 용량의 저수조(아파트 : 별도 협의)와 흡수정 이하의 정치를 동일단지내에 설치하고, 지하저수조를 경우하기전 인입관로상에 개폐시간 자동조절용 전동밸브를 설치하여 야간에 저수 상시급수토록 자율적으로 운영 관리해야 한다. 단, 아파트 저수조 용량에 대하여는 현재 추진중인 공신배수지 건설과 관련 우리본부(생산관리부)와 협의하여야 함.
2. 단전, 단수를 대비하여 아래의 비상발전설비와 비상급수시설을 설치 및 확보하여야 함.
 - 비상 발전기 등 전력공급 설비
 - 자체 동력을 겸한 항수펌프 및 비상급수대(표준도 : 권할수도사업소 비치)외 그 인걸용 호스

{	a : 1b1(3조)
}	a : 2, 4, 7, 8b1(각 2조)
 - 비상 급수공급에 필요한 정비, 자체, 공구 등
3. 급수에 따른 양수기실 및 단지내 배관 등 급수시설 공급에 관한 세부사항은 권할수도사업소장과 사전 협의하여야 함.
4. 우리본부에서 시행하는 배수지(구 공신배수지) 위치변경에 따른 단지내 상수도 계획을 별도 협의하여야 함.
5. 양수기 동파방지를 위하여 상수도사업본부와 협의할 것.
6. 권할사항 : 세대당 1일 200ℓ 이상의 비상용수를 공급할 수 있는 지하수 개발
7. 수도미터 동파 방지를 위하여 상수도 사업본부와 협의할 것.